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나2575 보험금
원고, 항소인 김●● (●●●●●-●●●●●)
충북 괴산군 괴산읍 ●●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강영철, 김우진, 조승범

피고, 피항소인 1.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대표이사 백일환, 정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
대표이사 권경현, 신창재

3.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대표이사 유석기

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대표이사 이수빈, 배정충, 신은철

피고 2.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 2. 7. 선고 2001가합523 판결
변론종결 2003. 4. 11.
판결선고 2003. 4.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 30,000,000원,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20,0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3,478,640원 및 이에 대한 2000.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 을 2호증의 12,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

의 각 기재에 전체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1) 장기상해좋은세상만들기 보험계약

- ㉠ 보험자 :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화재라 한다)
- ㉡ 피보험자 : 망인
- ㉢ 계약체결일 : 1999. 7. 19.
- ㉣ 보험기간 : 1999. 7. 19.부터 2004. 7. 19.까지
- ㉤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30,000,000원

(2) 슈퍼종합보장직장인 보험계약

- ㉠ 보험자 :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
- ㉡ 피보험자 : 망인
- ㉢ 계약체결일 : 1998. 5. 19.
- ㉣ 보험기간 : 1998. 5. 19.부터 2008. 5. 19.까지
- ㉤ 보험가입금액 : 일반사망(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의 경우 금 10,000,000원,
휴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 금 40,000,000원

(3) 무배당 으뜸교통상해 보험계약

- ㉠ 보험자 :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
- ㉡ 피보험자 : 망인
- ㉢ 계약체결일 : 1999. 6. 24.

㉔ 보험기간 : 1999. 6. 24.부터 2009. 6. 23.까지

㉕ 보험가입금액 : 휴일(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20,000,000원

(4) 동방에이스 보험계약

㉖ 보험자 :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

㉗ 피보험자 : 망인

㉘ 계약체결일 : 1985. 2. 26.

㉙ 보험기간 : 1985. 2. 26.부터 2005. 2. 26.까지

㉚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원, 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시 주계약보험금의 600%, 일반사망의 경우 주계약보험금의 200%에 더하여 사망시기에 따라 주계약보험금의 일정비율(10%~60%)을 차등지급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일반상해란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말하고, 재해로 인한 사망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재해로 보지 아니함)'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충북 괴산읍 동부리에서 약 18년 동안 '강릉한과'라는 상호로 한과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인 2000. 8. 12. 15:00경 위 점포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이웃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25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자로서 망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재해, 즉 망인이 알코올에 의한 호흡중추마비에 의하여 또는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다가 심하게 구토를 하여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급격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거나, 알코올을 과다섭취한 후 그 영향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 등에 부딪쳐 두개골내출혈상 등을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을 2호증의 3과 같다), 갑 6 내지 9호증(갑 6호증은 을 2호증의 11과 같다), 을 2호증의 1, 2, 4, 5, 6, 8, 9, 10의 각 기재(갑 9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채●●, 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기재와 갑 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인은 2000. 8. 12.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친구인 소외 채●●과 함께 소주 2홉들이 세병 반을 나누어 마시고 막걸리 1리터를 혼자 마신 다음, 자신이 경영하는 점포(강릉한과)로 갔는데, 같은 날 15:00경 점포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과자를 사러 온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나)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점포 바닥에 똑바로 누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토한 거품이 묻어 있었으며, 입에서 흘러내린 거품이 바닥

으로 흐르고 있었으나 외상이나 피부의 울혈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위 점포에 간 의사 박찬지가 망인의 입 주위에 묻어 있는 거품을 닦아 냈는데, 그 거품 속에 음식물 찌꺼기로 보이는 작은 이물질들이 들어 있었다.

(라) 망인은 박●●의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무렵인 같은 날 15:25경 사망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피산현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99. 1. 30.부터 같은 해 2. 5.까지와 2000. 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성 기관지염과 중증 기관지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중증 기관지천식의 경우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숨을 어렵게 쉬고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며 그밖에 구토, 두통, 탈진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발작증상이 나타나면 기관지확장제 등의 약을 쓰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거나 설사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타난 발작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발작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이른바 기관지천식 지속상태) 급성 호흡부전이나 심장관계 이상, 패혈증 등 다양한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당원의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법의학고실에 대한 사인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알코올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등에 의하여 또는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망인이 두개골내출혈상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_____

 판사 유●● _____

 판사 방●● _____